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의 공표 대상을 연간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화재·폭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리튬-염화티오닐 일차전지 제조업을 공정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기본 인력에 대한 강의시간 주기를 근로자의 정기 안전보건교육 주기와 일치시켜 인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6. 7. 14. ~ 8. 24.)
- 3) 행정규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2명”을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43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일차전지 제조업 중 염화티오닐을 전해액으로 사용하여 리튬 전지를 제조하는 제조업

별표 1 제2호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란 바목을 “기타 전문서비스업”에서 “전문서비스업”으로 한다.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바. 전문서비스업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 교육은 제외한다) 및 제30조
--	----------------------------------

별표 10 제1호가목 중 “분기별 12시간”을 “반기별 24시간”으로 한다.

[별표 10]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 기준(제40조 제1항 관련)

1. 기본사항 가. 기본인력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업무를 담당하면서 반기별 24시간 이상 강의를 하는 사람을 제2호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

별표 12 제1호가목 중 “분기별 12시간”을 “반기별 24시간”으로 한다.

[별표 12] 직무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3항제2호 관련)

1. 기본사항

가. 기본인력은 직무교육기관의 업무만을 담당하면서 반기별 24시간 이상 강의를 하는 사람을 3명[총괄책임자 1명과 교육대상에 따른 관련 분야별 강사 2명(제2호가목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분야의 강사 각 1명)] 이상으로 해야 하며, 제2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교육대상을 달리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 1명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별표 35 제4호초목 ‘위반행위’란의 “오목”을 “조목”으로 한다.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4. 개별기준

초. 법 제57조제3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조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75조 제3항제2호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3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니었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① ----- ----- ----- -----.
1.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라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1. ----- ----- -- 1명 -----
2. 사망만인율(死亡萬人率: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삭 제>
3. ~ 5. (생략)	2. ~ 4.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①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말하고,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① ----- ----- ----- ----- ----- -----

별표 13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같은 표 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취 급·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 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 비를 말한다. 1. ~ 7. (생 략) <u><신 설></u> ②·③ (생 략)	-----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u>일차전지 제조업 중 염화티 오닐을 전해액으로 사용하여 리튬 전지를 제조하는 제조업</u> ②·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8997